

# 2021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

어린이집용



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

# CONTENTS

## I. 어린이집 평가제 시행

1. 추진배경 .....	3
2. 추진경과 .....	8
3. 추진목적 .....	9
4. 주요내용 .....	9

## II. 어린이집 평가 운영

1. 일반사항 .....	17
2. 운영체계 .....	18
3. 평가지표 .....	55

## III. 평가지표와 평가기준

영역 1.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	71
영역 2.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	117
영역 3. 건강·안전 .....	151
영역 4. 교직원 .....	209

## IV. 부록

1. 「자체점검보고서」 작성방법 및 서식안내 .....	237
2.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 작성방법 및 서식안내 .....	264



# 어린이집 평가제 시행

1. 추진배경
2. 추진경과
3. 추진목적
4. 주요내용



# 어린이집 평가제 시행

## 1. 추진배경

2018년 12월 11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2019년 6월 12일부터 어린이집 평가제가 시행되었다. 평가제 시행은 지금까지 평가인증을 신청한 어린이집에 한해서만 이루어진 어린이집 질 관리가 전국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1)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의 시행 경과

2005년부터 시행되어 온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는 어린이집이 지향해야 하는 바람직한 보육서비스의 실재를 제시하고 질적 수준을 공정하게 평가할 뿐만 아니라, 수요자인 부모에게 합리적인 어린이집 선택 기준을 제공하고 정부의 효율적인 지원 및 관리체계를 위한 질 관리 기제로 작동하여 왔다<sup>1)</sup>. 제1차 평가인증('06~'09), 2차 지표와 3차 시범지표를 적용한 제2차 평가인증('10~'17.10.), 통합지표를 적용한 제3차 평가인증('17.11.~'19.6.11.)을 거치면서 제도의 운영과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왔으며, 변화하는 현장의 수준을 반영하여 지표를 개정함으로써 어린이집에서 지향해야 할 보육서비스의 바람직한 실재를 지속적으로 제시해 왔다.

1) 참고 : 한국보육진흥원(2017). 「어린이집 평가인증 12년」, 서문희·양미선·이정원·김온기·원종욱·송신영 (2013). 「어린이집의 질 제고를 위한 평가인증제도 중장기 개편방안」, 육아정책연구소, 이미화·서문희·최윤경·엄지원(2012).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어린이집 평가인증 발전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서문희·신희연·송신영(2009). 「보육시설 평가인증 효과 분석」, 육아정책연구소.

【표 1】 평가인증제도 시행 경과

구분		내용
도입	2003. 4. ~ 12.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 실시모형 개발 관련 연구용역 실시
	2004. 1.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 도입 근거 마련(영유아보육법 제30조)
시범 운영	2005	보육시설 평가인증 시범운영 실시
1차 시행	2006 ~ 2009	제1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시행
2차 시행	2010 ~ 2017. 10.	제2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시행
	2013. 9.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공표 시행
	2014. 11.	3차 시범지표 적용
	2016. 6.	유치원·어린이집 평가체계 통합방안 발표 (국무조정실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3차 시행	2017. 11. ~ 2019. 6.	제3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시행(통합지표 적용)

지자체의 지도점검 외에 별도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질 관리 기제가 없었던 제도 도입 이전에 비해,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참여율이 점차 높아지면서 보육의 질적 수준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 먼저 어린이집의 물리적 환경이 변하면서 영유아가 생활하기에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련되었고, 영유아의 놀이에 필요한 놀잇감이 충분하고 다양하게 갖추어졌다. 또한 인증 준비과정에서 보육환경과 보육과정, 영유아와의 상호작용, 어린이집 운영관리 등에 대해 지표에서 제시하는 바람직한 실재를 이해하고 적용해 나가면서 교직원들의 전문성은 자연스럽게 향상되었다<sup>2)</sup>.

2006년 본격 시행 이후 해마다 평가인증에 참여하여 인증에 통과한 어린이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2010년부터 인증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재인증으로 진입한 어린이집의 인증 통과율은 신규인증 어린이집의 인증통과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1차 평가인증에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질적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평가인증 2차 시행에 대한 분야별 간담회 개최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보육교직원, 전문가, 부모, 공무원 등의 의견을 청취하였음. 평가인증제도가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2,188명)의 90.3%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고, 평가인증을 통해 가장 도움이 된 부분으로는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모두 '어린이집의 환경 개선'(32.8%), '보육서비스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 향상'(21.9%), '운영관리의 체계성'(18.1%), '보육교사의 전문성 향상'(15.1%) 순으로 응답함(한국보육진흥원, 2017. 「어린이집 평가인증 12년」).

【 표 2 】 연도별 평가인증 참여 및 인증현황

단위: 개소,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2	2014	2016	2017	2018	2019.10.
참여확정(A)	3,525	4,956	6,605	8,446	8,847	13,328	13,036	11,682	11,747	11,210	6,285
인증통과(B)	2,804	4,181	5,464	7,303	6,899	11,506	12,618	11,152	11,362	10,813	5,780
통과율(B/A)	79.5	84.4	82.7	86.5	78.0	86.3	96.8	95.5	96.7	96.5	92.0

주: 2019년 10월 말 기준으로 산출함.  
출처: 한국보육진흥원 내부 자료

【 표 3 】 참여유형별 평가인증 참여 및 인증현황

단위: 개소,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10.	
신규인증	참여확정(C)	8,344	6,976	7,813	7,102	4,957	4,053	3,199	3,086	3,302	2,171
	인증통과(D)	6,426	5,667	6,304	6,781	4,746	3,866	3,071	2,954	3,108	1,912
	통과율(D/C)	77.0	81.2	80.7	95.5	95.7	95.4	96.0	95.7	94.1	88.1
재인증	참여확정(E)	503	5,923	5,515	6,306	8,079	7,768	8,483	8,661	7,908	4,114
	인증통과(F)	473	5,664	5,202	5,965	7,872	7,456	8,081	8,408	7,705	3,868
	통과율(F/E)	94.0	95.6	94.3	94.6	97.4	96.0	95.3	97.1	97.4	94.0

주: 2019년 10월 말 기준으로 산출함.  
출처: 한국보육진흥원 내부 자료

평가인증 이후 인증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비율도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제도 시행 초기인 2006년에는 3.6%에 불과하였던 인증 어린이집이 2009년 46.9%, 2014년 75.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평가인증 종료월 기준으로는 전체 어린이집 중 84.3%가 인증유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 표 4 】 평가인증 유지현황

단위: 개소,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2	2014	2016	2017	2018	2019.10.
전체(A)	28,367	29,233	30,856	33,499	35,550	38,021	42,527	43,742	41,084	40,238	39,171	37,362
인증유지(B)	622	1,060	4,500	9,683	16,686	21,154	27,357	33,050	32,795	32,630	31,625	31,504
유지율(B/A)	2.2	3.6	14.6	28.9	46.9	55.6	64.3	75.6	79.8	80.1	80.7	84.3

주: 2019년 10월 말 기준으로 산출함.  
출처: 한국보육진흥원 내부 자료

각 연도별로 평가인증 평균점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며, 신규인증과 재인증 어린이집을 비교한 결과 재인증 어린이집의 평균점수가 신규인증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3차 평가인증 통합지표의 등급 분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평가인증 과정이 어린이집의 질 관리에 효과적이며, 인증통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품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사후관리 체계의 효과로 볼 수 있다.

【 표 5 】 인증어린이집 평균점수(1차 지표)

단위: 점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전체	89.6	87.1	88.6	87.6	86.7

출처: 한국보육진흥원 내부 자료

【 표 6 】 참여유형별 인증어린이집 평균점수(2차 지표)

단위: 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전체	87.9	91.8	92.7	93.4	95.6	95.7	95.8	96.5
신규인증	87.7	91.5	92.7	92.9	94.8	95.2	95.2	96.0
재인증	90.2	92.2	92.7	94.0	96.1	96.0	96.1	96.8

출처: 한국보육진흥원 내부 자료

【 표 7 】 참여유형별 인증어린이집 평균점수(3차 시범지표)

단위: 점

구분	2015	2016	2017
전체	92.8	94.1	96.0
신규인증	91.6	92.6	94.6
재인증	93.5	94.7	96.5

출처: 한국보육진흥원 내부 자료

【 표 8 】 참여유형별 인증어린이집 등급분포(통합지표)

단위: %

구분		2017	2018	2019.10.
전체	A등급	85.1	89.3	89.5
	B등급	12.8	9.6	9.6
	C등급	2.1	1.1	0.9
신규인증	A등급	81.1	88.2	88.9
	B등급	16.2	10.5	9.9
	C등급	2.6	1.4	1.2

구분		2017	2018	2019.10.
재인증	A등급	86.1	89.7	89.8
	B등급	12.0	9.3	9.4
	C등급	2.0	1.0	0.8

주: 2019년 10월 말 기준으로 산출함.  
출처: 한국보육진흥원 내부 자료

## 2) 어린이집 평가제 전환

평가인증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현재까지 저출산 및 양육부담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로 보육서비스에 투입되는 재정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고, 영유아 시기의 중요성 및 아동 권리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사회적인 인식이 높아졌다.

보육서비스의 질 관리와 유지를 위해 도입된 평가인증제도는 어린이집의 물리적 환경 뿐만 아니라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과 같은 과정적 질 관리가 이루어짐에 따라 보육서비스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을 향상시켰다. 또한, 보육교직원의 역량 강화 및 전반적인 보육현장의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였으며, 부모의 합리적인 선택권 보장과 중앙 및 지방 정부의 효율적 보육재정 집행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평가인증제도가 어린이집의 자발적 신청에 의해 운영됨에 따라 미인증 어린이집으로 인한 질 관리 사각지대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최근 아동권리 보호, 아동학대 예방, 안전 관리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로 전체 어린이집 질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2018년 12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하여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국정과제 48-3)' 실현과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위해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 평가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2019년 6월 12일부터 어린이집 평가제가 시행되었다.

어린이집 평가제는 전체 어린이집의 질 관리를 위하여 평가 자체에 목적을 두기보다,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어린이집이 지속적으로 보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유지하게 함으로써 영유아의 안전과 건강, 조화로운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여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 2. 추진경과

2018년 12월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본격적인 평가제 시행을 위해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의무평가제 시행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평가제 운영체계와 지표 개발을 추진하였다.<sup>3)</sup>

연구를 통해 마련된 운영체계 및 지표(안)에 대해 공청회, 간담회, 온라인 대국민 의견수렴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는 보육전문가, 보육교직원, 부모 등이 참여한 협의체를 통해 최종 논의되었으며, 이후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제 시행을 위한 운영체계 및 지표가 최종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추진경과는 다음과 같다.

【표 9】 평가제 추진경과

구분	내용
2018. 12. 11.	「영유아보육법」 개정, 공포
2018. 12. 18. ~ 2019. 3. 31.	평가제 시행방안 연구용역
2019. 2. 26. ~ 2019. 4. 4.	의견수렴 실시(공청회, 간담회, 대국민 의견수렴, 협의체)
2019. 4. 15.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
2019. 6. 12.	어린이집 평가제 시행

평가제가 시행된 2019년 6월 이후 16,970개소의 어린이집이 평가대상으로 선정되어 참여하였으며, 평가 사각지대 조기 해소를 위해 2020년까지 미인증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평가하였다. 참여유형별 평가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10】 참여유형별 평가어린이집 등급분포

단위: 개소(%)

구분	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계	7,130	4,098 (57.5)	2,253 (31.6)	581 (8.1)	198 (2.8)
신규평가	3,029	1,565 (51.7)	1,034 (34.1)	298 (9.8)	132 (4.4)
정기평가	4,005	2,482 (62.0)	1,185 (29.6)	274 (6.8)	64 (1.6)
품질평가	96	51 (53.1)	34 (35.4)	9 (9.4)	2 (2.1)

주: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산출함.

출처: 한국보육진흥원 내부 자료

3) 이완정·권혜진·신나리·정선아·손승희·장혜진(2019).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의무평가제 시행방안」

### 3. 추진목적

어린이집 평가제 시행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시적인 보육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주요 핵심지표를 중심으로 질 관리 표준을 제시하고 어린이집 스스로 질적 수준을 제고하도록 한다.

둘째,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주기적 평가를 통하여 보육서비스 품질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반적인 보육서비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셋째, 궁극적으로 평가제를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제고함으로써 영유아의 안전과 건강, 조화로운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영유아의 인권과 놀 권리를 보장하고 영유아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안심 보육환경을 조성하며, 보육교직원이 영유아 보육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 4. 주요내용

#### 1) 주요 특징

평가제는 전체 어린이집에 대하여 평가를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결과 등급에 따라 관리하도록 설계되었다. 어린이집에는 평가의무가 부여되므로 「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4의6호에 따라 평가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 그에 따른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 평가제 특징을 평가인증제와 비교한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1】 평가인증제 및 평가제 특징 비교

구분	평가인증제	평가제																		
평가대상	• 평가인증 신청 어린이집	• 전체 어린이집																		
평가절차	<p>• 어린이집 신청 → 기본사항 확인 → 자체점검 → 현장평가 → 종합평가(총 4개월)</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신청</td> <td>기본사항 확인</td> <td>자체점검 보고서 제출</td> <td>현장평가</td> <td>종합평가, 결과통보</td> </tr> <tr> <td>어린이집</td> <td>지자체</td> <td>어린이집</td> <td>현장 평가자</td> <td>종합평가 위원회</td> </tr> </table> <p>• 참여수수료 어린이집 납부</p> <p>• 기본사항 : 필수항목 9개, 기본항목 - 필수항목 미준수는 참여 제외, 기본항목 미준수는 차하위 등급 부여</p> <p>• 소위원회와 종합평가위원회에서 심의, 등급 결정</p> <p>• 재참여, 재평가 과정 운영</p>	신청	기본사항 확인	자체점검 보고서 제출	현장평가	종합평가, 결과통보	어린이집	지자체	어린이집	현장 평가자	종합평가 위원회	<p>• 평가대상 통보 → 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점검 → 현장평가 → 종합평가(총 3개월)</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대상통보</td> <td>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점검보고서 제출</td> <td>현장평가</td> <td>종합평가, 결과통보</td> </tr> <tr> <td>한국보육진흥원</td> <td>지자체 어린이집</td> <td>현장 평가자</td> <td>종합평가 위원회</td> </tr> </table> <p>• 참여수수료 전액 국가 부담</p> <p>• 기본사항 : 사전점검사항 5개, 위반이력사항 - 사전점검사항 미준수는 D등급 부여, 위반 이력사항 발생 시 차하위 등급 부여</p> <p>• 소위원회와 종합평가위원회에서 심의, 등급 결정 * 필수지표 및 요소 미충족 시 A등급 불가</p> <p>• 재참여, 재평가 과정 폐지</p>	대상통보	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현장평가	종합평가, 결과통보	한국보육진흥원	지자체 어린이집	현장 평가자	종합평가 위원회
신청	기본사항 확인	자체점검 보고서 제출	현장평가	종합평가, 결과통보																
어린이집	지자체	어린이집	현장 평가자	종합평가 위원회																
대상통보	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현장평가	종합평가, 결과통보																	
한국보육진흥원	지자체 어린이집	현장 평가자	종합평가 위원회																	
평가결과	• 4등급(A, B, C, D), D등급 불인증	• 4등급(A, B, C, D)																		
평가주기	• (유효기간) 3년(A등급 1년 연장 가능)	• A, B등급 3년 / C, D등급 2년																		
결과공표	• 평가받은 어린이집의 결과 공시 - 평가인증 결과, 인증이력 등 공개	• 전체 어린이집의 결과 공시 - 평가결과, 평가이력 등 공개																		
사후관리 및 등급조정	<p>• 인증 어린이집 사후관리</p> <p>-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 제출</p> <p>- 확인점검(무작위, 월 단위 시기 안내)</p> <p>- 확인방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또는 1년 이상 재직교사로 대표자 변경, 주소변경)</p> <p>- 인증유효기간 종료</p> <p>- 법 위반 및 행정처분 발생 시 인증취소</p>	<p>• 평가 후 관리</p> <p>-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 제출(A, B등급)</p> <p>- 사후방문지원(C, D등급 의무 실시)</p> <p>- 확인점검(평가 관련 민원발생, 법 위반 및 행정 처분, 정보공시 부실어린이집 등에 대하여 불시점검)</p> <p>- 평가 등급 조정 및 관리</p> <p>- 법 위반 및 행정처분 발생 시 최하위 등급 조정</p>																		
결과활용	• 인증어린이집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p>• 평가 등급별 행·재정적 지원 등</p> <p>• 지도점검 연계(2회 연속 D등급 어린이집)</p>																		

## 2) 운영체계

어린이집 평가는 정해진 주기에 따라 대상을 선정하여 통보함으로써 시작된다. 대상통보는 총 2회에 걸쳐 진행되는데, 선정통보(1차)는 현장평가 6개월 이전에, 확정통보(2차)는 현장평가 2개월 전에 통보된다. 확정통보를 받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통보 익월부터 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점검, 현장평가, 종합평가 등의 과정이 3개월 간 진행된다.

각 어린이집의 평가 시기는 평가주기<sup>4)</sup>와 연계하여 정해지는데, 정해진 평가주기 외 신규개원, 대표자 변경, 행정처분 등의 사유 발생 시에는 별도로 정해진 평가시기에 맞춰 통보가 이루어진다. 또한 평가제 시행 이후에는 평가 참여수수료를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2020년에는 품질변동 요인별로 다르게 적용하였던 평가대상 선정 시기를 일관되게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종전 운영자 변동 없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한 신규개원 어린이집<sup>5)</sup>은 기존의 평가결과와 유효기간을 유지하되, 확인점검을 통하여 보육서비스 품질 유지 여부를 모니터링 하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기본사항 확인의 위반 이력사항 및 평가과정 중 변동사항 확인의 적용 기준일은 확정통보월에서 선정통보월로 변경하였다.

## 3) 평가지표

평가지표는 제3차 평가인증에서 적용하였던 통합지표<sup>6)</sup>를 기반으로 하되, 어린이집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였다.

평가제 지표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지표 간 항목 수 차이로 나타났던 등급 산정의 불합리성을 해소하고자, 지표를 21지표에서 18지표로, 79항목에서 59항목으로 축소하였고 지표별 평가항목 수를 평균 3~4개로 균형 배치하였다.

---

4) 기존 인증제의 인증유지 어린이집은 인증유효기간과 연계하여 평가시기를 맞추어 대상통보 됨.

5) 적용 기준일 : '20. 3. 1. 이후 국공립으로 전환한 신규개원 어린이집

6) 국무조정실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의 「유치원·어린이집 평가체계 통합방안」을 기초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공통으로 사용하도록 개발된 지표로, 2017년 11월부터 평가제 전환 이전까지 적용됨.

둘째, '영유아 권리 존중', '놀이', '안전' 가치 강조를 통해 영유아 중심의 안심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영유아 권리 존중(1-1) 지표를 필수지표로 지정하여 그 의미를 강조하고 놀이 중심의 보육과정 운영을 강화하였다. 또한 급·간식 위생 및 안전 항목 중 영유아의 등원부터 하원까지 안전하게 생활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필수요소(8개)를 지정하여, 필수지표 또는 필수요소 충족이 최상위 등급을 받을 수 있는 필수조건이 되도록 하였다.

셋째,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보육에 집중할 수 있는 보육환경 마련을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처우, 스트레스 관리 관련 지표를 강조하고 직무역량 제고를 위한 항목을 강화하였다.

2020년에는 2019 개정 누리과정 및 제4차 표준보육과정의 시행, 보육지원체계 개편 등 보육정책의 변화를 반영하여 평가항목을 일부 개선하였고, 2021년에는 영유아의 건강·안전 관리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급·간식의 보존식 보관, 부모 대상 아동학대 예방 교육, 차량 동승보호자 교육의 정기적 이수 등의 내용이 추가 반영되었다.

【 표 12 】 평가인증지표와 평가지표 비교

구분	평가인증제		평가제	
	영역(4)	지표(21)	항목(79)	지표(18)
I.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31 → 18)	1-1. 보육계획 수립 및 실행	4	1-1. 영유아 권리 존중 <b>필수</b>	2
	1-2. 일과 운영	5	1-2. 보육계획 수립 및 실행	6
	1-3. 교수-학습방법 및 놀이 지원	6		
	1-4. 교사-영유아 상호작용	6	1-3. 놀이 및 활동 지원	3
	1-5. 영유아 간 상호작용 시 교사 역할	4	1-4. 영유아 간 상호작용 지원	4
	1-6. 평가	4	1-5. 보육과정 평가	3
	1-7. 일상생활	2		
	소계		31	소계 18
II.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19 → 14)	2-1. 실내 공간 구성	5	2-1. 실내 공간 구성 및 운영	4
	2-2. 실외 공간 구성	3	2-2. 실외 공간 구성 및 운영	3
	2-3. 기관 운영	4		
	2-4.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5	2-3. 기관 운영	4
	2-5. 어린이집 이용 보장	2	2-4.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3
	소계		19	소계 14
III. 건강·안전 (15 → 15)	3-1. 실내외 공간의 청결 및 안전	4	3-1. 실내외 공간의 청결 및 안전	3
	3-2. 급·간식	3	3-2. 급·간식	3
	3-3.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관리	3	3-3.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관리	3
	3-4. 등·하원의 안전	2	3-4. 등·하원의 안전	3
	3-5. 안전교육 및 사고 대책	3	3-5. 안전교육과 사고예방	3
	소계		15	소계 15
IV. 교직원 (14 → 12)	4-1. 원장의 리더십	4	4-1. 원장의 리더십	3
	4-2.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3	4-2.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3
	4-3. 보육교직원의 처우와 복지	3	4-3. 보육교직원의 처우와 복지	3
	4-4.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제고	4	4-4.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제고	3
	소계		14	소계 12

\* 3-2, 3-4, 3-5 지표 내 필수요소 8개 포함



## 어린이집 평가 운영

1. 일반사항
2. 운영체계
3. 평가지표

## II

# 어린이집 평가 운영

## 1. 일반사항

### 1) 기본방향

- 국가 차원의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모든 어린이집의 상시적인 보육서비스 질을 확보하고,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실현 및 안심 보육환경을 조성한다.

### 2) 법적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0조(어린이집 평가)

-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업무는 한국보육진흥원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 3) 사업개요

- 평가대상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한 모든 어린이집(방과후 전담 어린이집 제외)
- 평가내용 :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1항과 관련된 평가지표
  - ※ 평가지표의 평가영역 및 항목, 평가방법, 평가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정함
- 평가과정 : 평가대상 선정 및 통보, 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점검, 현장평가, 종합평가
- 수수료 : 참여수수료 전액 국가부담

## 2. 운영체계

어린이집 평가과정은 평가대상 어린이집의 선정 및 통보로 시작되며, 기본사항 확인, 자체 점검보고서 제출, 현장평가, 종합평가 순으로 진행된다. 어린이집 평가 운영체계는 아래와 같다.



[그림 1] 어린이집 평가 운영체계

## 1) 평가대상 선정 및 통보

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평가주기에 따라 평가대상을 선정하여 해당 어린이집 및 지자체에 통보한다.



### 가. 평가대상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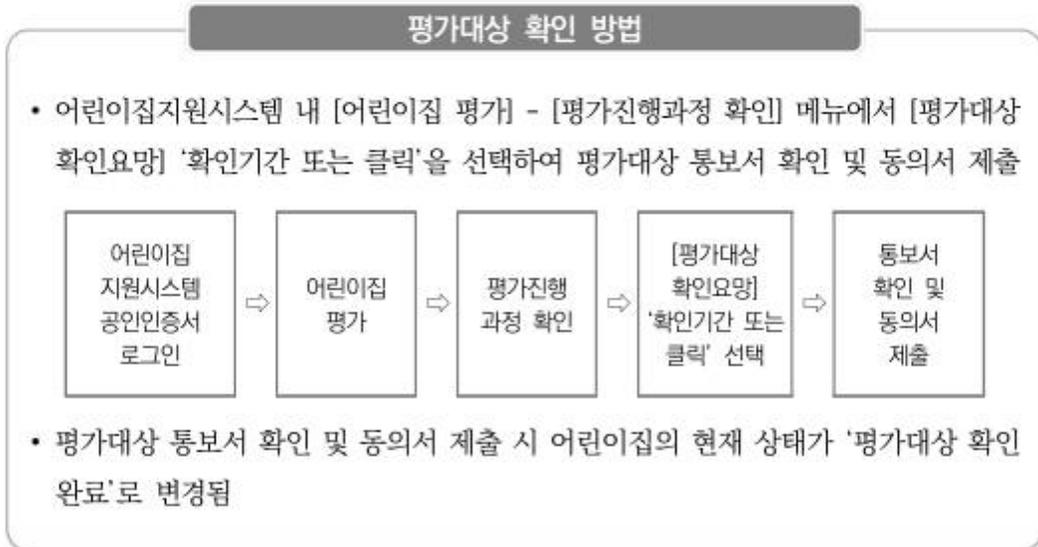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한 모든 어린이집(방과후 전담 어린이집 제외)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 ※ 평가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시정 또는 변경명령(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4의6호)
- 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평가주기에 따라 평가대상을 선정하여 통보하고, 선정 통보일로부터 6개월 경과 시 현장평가를 진행한다.
  - 평가 어린이집은 평가 도래 시기(인증유지 어린이집은 인증유효기간과 연계하여 만료 전 평가 실시)에 맞추어 평가 실시
  - 신규평가 어린이집은 개원일(또는 운영재개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평가대상으로 선정하며, 대상선정 통보 후 6개월 경과 시 현장평가 실시
    - ※ 기존 인증유지 중인 어린이집에서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인증유효기간 종료 처리 후 변경인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선정통보 진행
  - 단, 종전 운영자 변동 없이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으로 신규개원 어린이집\*은 기존의 평가결과와 유효기간을 유지하며, 확인점검을 통하여 보육서비스 품질 유지 여부를 모니터링함
    - \* 적용 기준일 : '20. 3. 1. 이후 국공립으로 전환한 신규개원 어린이집

## 나. 평가대상 통보 및 확인

- 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평가대상 어린이집을 선정하고, 평가일정을 해당 어린이집 및 지자체에 통보한다.
- (통보시기) 평가대상 선정통보(1차)는 현장평가월 기준 6개월 전, 확정통보(2차)는 현장평가월 기준 2개월 전 실시한다.
  - ※ 연간 평가진행 일정에 따라 평가대상 통보 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 통보대상 및 절차
  - (선정통보(1차)) 평가대상 어린이집 및 해당 지자체(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상선정 사실 및 평가일정을 통보함
    - (어린이집)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어린이집에 대해 대상선정 사실 및 평가일정을 통보(1차)하며, 대상 선정통보를 받은 어린이집은 10일 이내 '평가대상 선정통보서'를 확인한 후 '평가실시에 대한 동의서' 및 '어린이집 정보 확인 및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함
      - ※ 동의서 미제출 및 지연 제출 시, 평가 거부, 기피 또는 방해 등으로 간주하여 시정 또는 변경명령(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4의6호)
    - (지자체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한국보육진흥원은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어린이집 명단을 해당 지자체(육아종합지원센터)에 통보함
  - (확정통보(2차)) 평가대상 어린이집 및 해당 지자체에 대상 확정 사실을 통보함
    - (어린이집) 선정통보(1차)에 의해 '평가실시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확정통보(2차)함
    - (지자체) 한국보육진흥원은 평가대상으로 확정된 어린이집 명단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함

업무주체	주요업무	내용
한국보육진흥원	평가대상 선정통보(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가대상 어린이집 선정 →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평가대상 어린이집에 선정통보 안내</li> <li>평가대상 선정 어린이집 명단 통보 (진흥원 → 지자체·육아종합지원센터)</li> </ul>
↓		
어린이집	대상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가대상 선정통보서 확인 후 '평가실시에 대한 동의서' 및 '어린이집 정보 확인 및 제공 동의서' 제출 (10일 이내)</li> </ul>
↓		
한국보육진흥원	평가대상 확정통보(2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가대상 선정통보(1차) 후 동의서 제출을 완료한 어린이집에 대해 확정통보</li> <li>평가대상 확정 어린이집 명단 통보(진흥원 → 지자체)</li> </ul>

[그림 2] 평가대상 통보 업무흐름도



## 다. 진행일정

평가 기수	대상 선정 통보 (1차)	대상 확정 통보 (2차)	진행일정			
			기본사항 확인/ 자체점검보고서 제출(1개월)	현장 평가 (1개월)	종합 평가 (1개월)	결과 통보
'21. 1기	'20. 8월	'20. 12월	'21. 1월	'21. 2월	'21. 3월	'21. 4월
'21. 2기	'20. 9월	'21. 1월	'21. 2월	'21. 4월 초	'21. 4월	'21. 5월
'21. 3기	'20. 10월	'21. 2월	'21. 3월	'21. 4월	'21. 5월	'21. 6월
'21. 4기	'20. 11월	'21. 3월	'21. 4월	'21. 5월	'21. 6월	'21. 7월
'21. 5기	'20. 12월	'21. 4월	'21. 5월	'21. 6월	'21. 7월	'21. 8월
'21. 6기	'21. 1월	'21. 5월	'21. 6월	'21. 7월	'21. 8월	'21. 9월
'21. 7기	'21. 2월	'21. 6월	'21. 7월	'21. 8월	'21. 9월	'21. 10월
'21. 8기	'21. 3월	'21. 7월	'21. 8월	'21. 9월	'21. 10월	'21. 11월
'21. 9기	'21. 4월	'21. 8월	'21. 9월	'21. 10월	'21. 11월	'21. 12월
'21. 10기	'21. 5월	'21. 9월	'21. 10월	'21. 11월	'21. 12월	'22. 1월
'21. 11기	'21. 6월	'21. 10월	'21. 11월	'21. 12월	'22. 1월	'22. 2월
'21. 12기	'21. 7월	'21. 11월	'21. 12월	'22. 1월	'22. 2월	'22. 3월
'22. 1기	'21. 8월	'21. 12월	'22. 1월	'22. 2월	'22. 3월	'22. 4월
'22. 2기	'21. 9월	'22. 1월	'22. 2월	'22. 4월 초	'22. 4월	'22. 5월
'22. 3기	'21. 10월	'22. 2월	'22. 3월	'22. 4월	'22. 5월	'22. 6월
'22. 4기	'21. 11월	'22. 3월	'22. 4월	'22. 5월	'22. 6월	'22. 7월
'22. 5기	'21. 12월	'22. 4월	'22. 5월	'22. 6월	'22. 7월	'22. 8월

※ 평가 진행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라. 평가시기 조정

- 어린이집의 특정 사유로 인해 통보된 일정에 평가받기 어려운 경우 3개월 전·후로 평가시기 조정이 가능하다.
  - 평가시기 조정 희망 어린이집은 평가대상 선정통보일(1차)로부터 익월 1개월 내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조정신청(조정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하고, 한국보육진흥원은 어린이집에서 제출한 조정사유를 최종 확인 후 결과를 해당 어린이집으로 통보함
    - ※ 단, 해당 월 평가 진행 개소수에 따라 평가시기가 조정될 수 있음
  - (대상) 어린이집의 특정 사유로 인해 통보된 일정에 평가받기 어려운 경우
  - (인정 사유) 확정통보(2차) 월로부터 현장평가월 중 다음의 사유 발생이 예정된 경우
    - 어린이집 환경개선 공사(2주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 한함, 도배·장판 교체는 제외)
    - 보육교직원(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의 출산에 따른 산전후휴가일이 포함된 2주 이상 휴가
    - 보육교직원(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의 2주 이상 장기 입원
  - ※ 평가 참여시기를 조정신청한 어린이집의 평가주기는 당초기수의 주기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평가시기 조정신청 방법

- (신청기간) 대상통보일(1차)로부터 익월 1개월 내 조정신청 가능
- (신청방법)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내 [어린이집 평가] - [평가시기 조정] 메뉴에서 희망기수를 선택하고, 조정신청서 및 증빙서류 작성·제출



- (결과확인) 어린이집에서 제출한 조정사유 최종 확인 후 해당 어린이집에 통보

## 2) 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점검 보고서 제출' 단계에서 지자체(시·군·구)는 평가대상 확정 통보된 어린이집에 대해 기본사항을 확인하고, 어린이집은 자체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가. 기본사항 확인

- 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평가대상 확정 어린이집 명단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시·군·구)에서는 기본사항을 확인하여 결과를 정해진 기한 내에 한국보육진흥원으로 통보한다.
- 지자체의 기본사항 확인 업무
  - 시·군·구는 해당 기수의 평가대상 확정 어린이집의 기본사항(사전점검사항 및 위반이력사항)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정해진 기한 내에 시·도에 통보함
  - 시·도는 시·군·구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확인한 후, 한국보육진흥원에 최종 통보함
- 기본사항 확인 내용 : 사전점검사항(5항목), 위반이력사항
  - 사전점검사항 미준수 시에도 현장평가는 진행하되, 종합평가 전까지 개선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반영함(최종 미개선 시 최하위 등급 부여)
  - 선정통보 직전월 말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위반이력사항이 발생한 경우, 종합평가 시 최하위 등급으로 조정함

• 사전점검사항 : 5항목

항 목	평 칭	평정기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관련 보험 가입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든 영유아에 대한 상해보험과 어린이집에 대한 화재 및 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li> <li>임용된 모든 보육교직원에 대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li> </ul>
	미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유아 상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li> <li>화재보험 또는 배상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li> <li>임용된 모든 보육교직원에 대한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li> </ul>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린이집 내 영유아용 화장실, 목욕실, 조리실이 설치되어 있고,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보육실, 공동놀이실 등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li> <li>*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경우 보호자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설치하지 않을 것으로 신고하거나,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설치 면제</li> <li>*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참조</li> <li>정원 50인 이상 어린이집에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li> </ul>
	미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린이집 내 영유아용 화장실, 목욕실, 조리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폐쇄 회로 텔레비전이 보육실, 공동놀이실 등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li> <li>인가공간을 무단 전용하는 경우</li> <li>*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참조</li> <li>정원 50인 이상 어린이집에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li> </ul>
보육실의 설치기준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가정원 대비 보육실의 면적이 설치기준을 충족한 경우</li> <li>*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참조</li> <li>* 기존 어린이집('05. 1. 29 이전 설치 신고된 어린이집)은 구(舊)법 적용</li> </ul>
	미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가정원 대비 보육실의 면적이 설치기준 미만인 경우</li> <li>인가공간을 무단 전용하는 경우</li> <li>*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참조</li> </ul>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중 일반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li> <li>*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2] 참조</li> </ul>
	미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중 일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li> <li>*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2] 참조</li> </ul>
비상재해 대비시설 설치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을 충족한 경우(보육사업안내 I-11 참조)</li> <li>*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참조</li> </ul>
	미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보육사업안내 I-11 참조)</li> <li>*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참조</li> </ul>

※ 사전점검사항 미준수 항목이 종합평가 때까지 개선되지 않은 경우 종합평가에서 최하위 등급(D등급)을 부여함

• 위반이력사항

구분	확인내용	결과반영
운영정지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라 3백만원 이상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유용하여 6개월 이상의 운영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종합평가 시 차하위 등급 부여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3백만원 이상 비용 또는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하여 6개월 이상의 운영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운영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5호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운영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과징금 처분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에 따라 제45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5호의 6개월 이상의 운영정지 행정처분에 같은한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에 따라 제45조제1항제4호의 운영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에 같은한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경우	
보조금 반환명령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3백만원 이상 보조금의 반환 명령을 받은 경우	
원장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	영유아보육법 제46조에 따른 자격정지 6개월 이상인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8조에 따른 자격취소	
보육교사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	영유아보육법 제47조에 따른 자격정지 6개월 이상인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8조에 따른 자격취소	
금고 이상의 형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아동복지법 등 위반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거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제2조제3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수사, 재판 계류 중에 있는 경우 포함)	
식품위생법 위반	식품위생법 제9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제95조제1호 또는 제4호, 제97조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은 경우	

※ 선정동보 직전월 말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위의 위반이력사항이 발생한 경우 종합평가 시 차하위 등급으로 조정

## 기본사항 확인 결과 확인 방법

- 어린이집의 기본사항 확인 결과는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내 [어린이집 평가] - [평가 진행과정 확인] 메뉴에서 어린이집의 현재 상태로 확인(기본사항 확인 준수/미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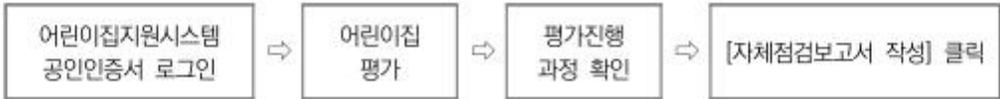


### 나.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 한국보육진흥원은 평가대상으로 확정통보 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자체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한다.
- 평가대상으로 확정통보 된 어린이집은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통보된 기한 내에 자체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자체점검 시 원장, 보육교사, 원아 부모 각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자체점검위원회 (3~7인 이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수행 가능)를 구성하여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어린이집의 운영 전반을 점검함
    - ※ 자체점검보고서 작성 시 심각하게 허위로 작성한 경우 등급이 조정될 수 있음
    - ※ 정당한 이유 없이 자체점검보고서 미제출 및 지연제출 시, 평가 거부, 방해 또는 기피 등으로 간주하여 시정 또는 변경명령(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4의6호)
  - 자체점검보고서에는 평가항목별 점검결과(Y/N), 총평, 법 위반 및 행정처분 이력사항 등을 작성함(부록1 참고)
    - ※ 법 위반(아동학대 포함) 및 행정처분은 대표자 변경 및 보육교직원 면직여부와 관계없이 사유 발생 사실을 확인하여 제출(수사, 재판 계류 중에 있는 경우 포함)
  -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시 선정통보 직전월 말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법 위반 및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하여 제출함
    - \* 자체점검보고서 내 법 위반 및 행정처분 이력사항 작성 내용이 거짓으로 확인될 경우 최하위 등급(D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음

### 자체점검보고서 입력 방법

- 자체점검보고서는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내 [어린이집 평가] - [평가진행과정 확인] 메뉴에서 자체점검보고서 작성을 클릭하여 입력



※ 자체점검보고서 제출완료 이후에는 자체점검보고서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제출완료] 전 최종 점검 후 [제출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주체	주요업무	내용
한국보육진흥원	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기간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사항 확인 대상 및 기간 안내(진흥원 → 지자체)</li> <li>•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기간 안내(진흥원 → 어린이집)</li> </ul>
시·도 시·군·구 어린이집	(지자체) 기본사항 확인 및 입력 (어린이집)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사항 확인 및 결과 입력 (시·군·구 → 시·도 → 진흥원)</li> <li>• 자체점검 및 자체점검보고서 제출(어린이집 → 진흥원)</li> </ul>
한국보육진흥원	기본사항 및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결과 확인 후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사항 결과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점검사항 준수 여부 확인하고 미준수 어린이집에 대해 개선 확인 요청(진흥원 → 시·도 → 시·군·구)</li> <li>- 위반이력사항 발생 여부 확인</li> </ul> </li> <li>•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결과 확인</li> </ul>

[그림 3] 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업무흐름도

### 3) 현장평가

'현장평가' 단계에서는 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점검보고서 제출을 완료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평가지표에 따라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에 대한 현장평가 및 보고가 이루어진다.



#### 가. 현장평가 주간 통보

- 한국보육진흥원은 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점검보고서 제출을 완료한 어린이집에 현장평가 직전월 말에 1주간의 현장평가 주간을 지정하여 통보하며, 해당 평가 주간 중 현장평가일을 정하여 사전 고지 없이 현장평가자를 어린이집에 파견한다.
  - ※ 고지된 현장평가 주간은 원칙적으로 변경 불가능함. 다만, 어린이집의 정상적인 운영 또는 보육교직원의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경우(예 : 보수교육, 상(喪), 휴원령 등)에 한하여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어린이집별로 조정 가능
  - ※ 현장평가월 이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운영(영유아 재원)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현장평가 진행이 가능하며, 현장평가 전 '원원 0명'으로 확인될 경우 과정이 중단됨
- 어린이집에서는 현장평가 주간을 현장평가월 1주일 전에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현장평가 주간 확인 방법

- 현장평가 주간 확인은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내 [어린이집 평가] - [평가진행과정 확인] 메뉴에서 '현장평가주간 확인' 클릭하여 확인
- 확인시기 : 기수별 현장평가월 1주일 전



## 나. 현장평가 실시

- 현장평가는 어린이집 1개소 당 2인(정원 99인 이하 어린이집) 또는 3인(정원 100인 이상 어린이집)의 현장평가자가 방문하여 1일간 실시한다.
  - ※ 단, 어린이집 정·현원 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
  - ※ 현장평가 당일 어린이집과 현장평가자 간 이해관계가 확인된 경우 평가를 중단하고 추후 현장평가자를 재파견함
- 현장평가자의 어린이집 도착 예정시간은 09:00~09:30이며, 현장평가 종료 예정 시간은 16:30~17:30임
  - ※ 필요시 연장하여 진행 가능
- 현장평가자는 실명이 기재된 현장평가자증을 패용함
  - 현장평가자의 성명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현장평가자의 개인정보는 어린이집에 알리지 않음
- 현장평가자는 평가대상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근무상황 및 영유아 재원사항, 어린이집에서 제시한 하루일과표와 실내외배치도를 확인한 후 현장평가를 시작함
  - ※ 등원 거부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 또는 점검을 받은 경우, 최하위 등급(D등급) 부여, 시정 또는 변경명령(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4의6호) 가능
- 현장평가자는 무작위로 선정된 보육실 2개반을 중심으로 어린이집의 실내의 전체(인가공간)를 관찰함
- 어린이집의 운영상황을 고려하여 어린이집에서 희망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관찰반을 선정할 수 있음(영유아 모두 재원 시, 영아반과 유아반 각 1반씩 포함되어야 함)
  - 영아반과 유아반을 각각 2개반씩 무작위로 추첨 후, 어린이집 원장이 2개반을 최종 선정함
    - ※ 원활한 현장평가 진행을 위해 원장이 자리를 비우는 등의 상황 발생 시 원감, 주임교사 등의 보육교직원이 관찰반을 대신 선정하여 진행하며,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영역과 관련하여 실내외 놀이 등 일과 전반에서 영유아의 놀이 및 활동, 교사의 상호작용에 대한 관찰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 100인 이상 어린이집의 경우, 현장평가자 3인 중 1인은 기록(문서) 검토

## 현장평가 시 어린이집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

### 1) 일상적 일과 진행 및 출석 기준 충족

- 현장평가 주간에는 어린이집에 견학 등 행사 없이 일상적 일과가 진행되어야 함
- 현장평가 당일에는 영유아 현원의 2/3 이상이 출석하여야 함

※ 현장평가일에 출석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현장평가가 중단되며, 사유 확인 후 현장평가자를 재파견함

\* 방과후 아동이 있는 경우의 현원 대비 출석인원 산정

- 방과후 아동을 제외한 현원의 2/3 이상

(예시) 현원 33명(영유아 25명, 방과후 아동 8명)의 경우, 방과후 아동을 제외한 영유아 현원(25명)의 2/3 이상 → 따라서 25명의 2/3 이상 = 16명 이상

### 2) 현장평가 시 필요한 서류 준비

#### ① 원아명단

- 평가 당일, 현장평가자가 보육통합시스템을 통해 원아명단을 출력할 수 있도록 협조

#### ② 어린이집 실내외배치도(배치도는 실제 인기받은 공간과 동일하게 준비)

#### ③ 하루일과표 혹은 일일보육계획안(활동에 따른 시간 명시)

#### ④ 보육교직원(원장, 보육교사) 자격증 사본

#### ⑤ 임면사항 관련 서류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관련 내용 출력물, 임면대장 등

#### ⑥ 보육교직원 경력 관련 서류

- 경력증명서, 직무 및 승급교육 수료증 등

※ 직무 및 승급교육 대상자 확인을 위하여 임용되어 있는 모든 보육교직원의 경력증명서를 비치하여야 함

※ 직무 및 승급교육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직무 및 승급교육 수료증을 반드시 비치하여야 함(보육사업안내 서식 참조)

#### ⑦ 평가지표 관련 문서

- 예 : 보육계획안, 보육일지, 식단표 등

※ ①, ②, ③은 현장평가자에게 제출하며 지표 평정에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재정 관련 서류 등)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음

- 현장평가는 하루 일과 전반에 걸쳐 관찰, 기록(문서) 검토, 면담 등의 방법을 통해 진행한다.
  - 기록(문서) 확인 기간은 다음과 같음
    - 보육일지 : 현장평가월 이전 1개월부터
    - 그 외의 기록(문서) : 현장평가월 이전 3개월부터
      - ※ 1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항목의 경우 전년도 기록 확인
- 현장평가일에는 미임용 보육교직원을 확인하며, 타 어린이집에 임용 중인 보육교직원(원장 포함)은 평가대상 어린이집에 근무하거나 지원 활동을 할 수 없다.
  - ※ 어린이집에 미임용 교직원이 있는 경우, 현장평가자와 원장은 미임용 교직원이 타 어린이집에 재직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여 '현장평가 상호확인서'에 해당 내용을 작성하여야 함
- 현장평가 후 상호확인
  - 현장평가 종료 전 어린이집의 원장과 현장평가자는 상호확인 항목에 대해 확인한 후 '현장평가 상호확인서'에 서명함
    - 작성 완료 후 '현장평가 상호확인서' 공유(복사본 제공)
      - ※ 현장평가 상호확인서 항목 : 영유아 정원/현원/출석 현황, 보육실 정보, 어린이집 운영기준, 평가지표 확인 내용 등
      - ※ 현장평가 시 확인한 사항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최하위 등급(D등급)으로 조정
- 어린이집은 원활한 현장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 정당한 이유 없이 현장평가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시정 또는 변경명령(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4의6호) 가능
  - ※ 현장평가 전 '현원 0명'으로 확인된 경우, 과정이 중단됨
- 현장평가자는 현장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현장평가자는 현장평가 후 현장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관리통합시스템에 입력하고, 현장평가 관련 자료를 한국보육진흥원으로 제출함

#### 다. 어린이집 운영기준 확인

- 한국보육진흥원은 현장평가 시 어린이집 운영기준 개선필요사항이 확인된 경우 시·도 및 시·군·구에 통보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 (확인항목) 영유아 재원사항, 보육교직원 근무상황
- 시·군·구는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통보받은 현장평가 당일 발견된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개선필요사항에 대하여 확인하고, 그 개선결과를 7일 이내에 시·도로 통보한다.
- 시·도는 시·군·구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확인 후 7일 이내에 한국보육진흥원에 최종 통보한다.
- 종합평가 전까지 개선 여부가 통보되지 않거나, 미개선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종합평가 단계에서 확인 후 '최하위 등급(D등급)'을 부여한다.

업무주체	주요업무	내용
한국보육진흥원	현장평가	• 어린이집 운영기준 개선 필요사항 발생 여부 확인, 지자체(시·도 → 시·군·구) 통보
↓		
시·군·구	어린이집 운영기준 개선 확인	• 어린이집 운영기준 개선 필요사항 확인 및 개선결과 시·도 통보
↓		
시·도	어린이집 운영기준 개선결과 통보	• 어린이집 운영기준 개선결과 최종 확인 및 한국보육진흥원 통보
↓		
한국보육진흥원	어린이집 운영기준 개선결과 반영	• 어린이집 운영기준 개선결과 확인 및 반영 * 단, 어린이집 운영기준 개선 필요사항 미개선 시 종합평가 단계에서 확인 후 최하위 등급(D등급) 부여

[그림 4] 어린이집 운영기준 확인 업무흐름도

## ■ 어린이집 운영기준 ■

연번	항목	확인방법
1	영유아 채원사항	- 증빙자료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등록 영유아가 재원하고 있는 경우</li> <li>•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등록된 반과 다른 반에서 영유아를 보육하는 경우</li> <li>• 등록된 반 구성을 임의 변경하여 서로 다른 연령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li> <li>• 등록된 반 구성을 임의 변경하여 혼합반 구성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li> <li>• 퇴소한 원아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li> </ul>
2	보육교직원 근무상황	- 증빙자료 : 보육교직원 관리 대장,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장 및 보육교사가 무자격인 경우</li> <li>• 원장 및 보육교사가 미임용 상태로 근무하는 경우</li> <li>• 원장 및 보육교사가 역할변경 및 미수행한 경우(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것과 다르게 역할을 바꾸어 근무하거나, 역할 미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임교사(단, 보조교사 제외), 대체교사 등</li> </ul> </li> <li>• 원장 및 보육교사가 근무시간을 미준수한 경우</li> <li>• 타 어린이집에 임용된 보육교직원(기타 보육교직원 포함)이 근무하는 경우</li> </ul>

※ 보육교직원 근무상황, 반 구성 및 영유아 채원사항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정보와 동일해야 하며, 임의로 보육통합정보시스템과 다르게 운영하지 않도록 유의

### 현장평가자 자격

- ① 영유아 관련학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사 경력 3년 이상인 자
- ② 영유아 관련학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사 경력 3년을 포함하여 총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교사 경력은 유치원 교사 경력을 포함하되, 반드시 1년 이상 어린이집 근무 경력(보육교사 또는 원장)이 있어야 한다.
  - ※ 평가 관련 업무(강의, 자문, 컨설팅 등)를 수행하는 경우, 종합평가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현장평가자로 활동할 수 없음
  - ※ 기타 현장평가자 선발 및 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별도로 정하여 고지

#### 4) 종합평가

'종합평가' 단계에서는 평가등급 결정(조정)이 필요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기본사항확인서, 자체점검보고서, 현장평가보고서 등을 토대로 종합평가가 진행된다.



##### 가. 종합평가위원회 구성

- 종합평가위원회는 학계전문가, 현장전문가, 보육담당공무원으로 구성한다.
- 종합평가위원의 위촉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재위촉이 가능하다.  
※ 소위원회와 종합평가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없음

##### 나. 종합평가 진행

- 종합평가는 소위원회와 종합평가위원회에서 진행한다.
- 소위원회에서는 기본사항확인서, 자체점검보고서, 현장평가보고서 등을 검토한 후 등급 및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 등에 대해 심의하여 종합평가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한다.
- 종합평가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거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의 후 전체 종합평가 대상 어린이집의 최종등급 및 평가주기를 확정한다.
-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어린이집의 질적 개선 방향을 평가결과서에 제시한다.

### ■ 종합평가 절차 및 내용 ■

구 분	내 용
(1단계) 소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사항확인서, 자체점검보고서, 현장평가보고서 등을 검토한 후, 종합평가 기준에 맞추어 등급 및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 등에 대해 심의하여 종합평가위원회에 안건 상정</li> <li>※ 자체점검보고서 작성 시 심각하게 허위로 작성한 경우 등급조정 가능</li> <li>- 선정통보 직전월 말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위반이력사항이 발생한 경우 종합평가 시 차하위 등급으로 조정</li> <li>- 평가과정에서 아래 사항 중 하나 이상 해당되면 최하위 등급(D등급)으로 조정</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의 평가등급을 최하위로 조정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li> <li>• 평가 진행 일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li> <li>• 평가와 관련하여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li> <li>• 현장평가 시 발견한 어린이집 운영기준 개선필요사항이 종합평가 전까지 개선되지 않은 경우</li> <li>• 사전점검사항 미준수 항목이 종합평가 전까지 개선되지 않은 경우</li> </ul> </div>
(2단계) 종합평가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위원회를 거쳐 상정된 인건에 대해 심의 후 전체 종합평가 대상 어린이집의 최종등급 및 평가주기를 확정함</li> <li>■ 기타 등급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하여 어린이집의 최종등급 및 평가주기를 확정함</li> </ul>

※ 각 기수별로 종합평가 종료부터 결과통보 전까지 '종합평가 시 최하위 등급 조정 사유'에 대해 해당 여부 재확인

#### 다. 평가과정 중 변동사항 확인

- 평가과정 중인 어린이집에서 선정통보월 이후 법 위반 및 행정처분, 인가변동 사항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어린이집 및 시·군·구에서는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에 변동사항 발생 사실을 통보한다.

- 법 위반 및 행정처분 등의 변동사항 발생
  -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행정처분(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 제45조, 제45조의2, 제46조, 제47조, 제48조)을 받은 경우
  -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성폭력, 아동학대, 운영 부조리 등으로 인하여 대표자 및 보육교직원이 고발 또는 고소되거나 수사, 재판 계류 중에 있는 경우

\* 법 위반(아동학대 포함) 및 행정처분은 대표자 변경 및 보육교직원 면직여부와 관계없이 사유 발생 사실을 확인하여 제출(수사, 재판 계류 중에 있는 경우 포함)

• 인가변동사항 발생

- 어린이집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 다만, 아래의 경우는 변동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봄

- 2011.8.4일 개정된 영유아보육법(법률 제11002호)에 따른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 등/직장/협동 어린이집 또는 타 법령에 따른 법인·단체가 설치한 어린이집에서 대표자가 변경되었으나, 어린이집의 실소유권이 기존 기관/단체/법인 명의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어린이집이 휴지 또는 폐지된 경우

● 어린이집 또는 시·군·구에서 통보한 상기 변동사항 확인결과를 종합평가 시 반영 및 평가주기를 조정한다.

- 법 위반 및 행정처분 : 최하위 등급(D등급) 조정 또는 확인점검

• 인가변동사항 : 과정중단 및 평가주기 조정

- 기본사항 확인 전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과정중단 없이 진행
- 현장평가가 완료된 어린이집 또는 평가주기 4년이 도래한 어린이집은 과정중단 없이 진행
- 인증유지 어린이집에서 인증취소 또는 인증유효기간 종료사유 발생 시, 경과조치에 따라 구(舊)법을 적용하여 인증취소 또는 인증유효기간 종료처리 및 평가과정도 중단
- ※ 단, 현장평가 완료 후 인증취소 또는 인증유효기간 종료 절차 진행 시 과정중단 없이 진행

● 변동사항 관련 업무

- (지자체) 시·도 및 시·군·구는 변동사항(법 위반 및 행정처분, 인가변동사항 등) 발생 사실 확인 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보육진흥원에 즉시 통보함
- (어린이집) 평가과정 중인 어린이집은 선정통보월부터 결과통보 전까지 변동사항(법 위반 및 행정처분, 인가변동사항 등)이 발생한 경우 한국보육진흥원에 즉시 통보함

- (한국보육진흥원) 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통보받은 변동사항을 종합평가 시 반영하여 등급 결정 또는 평가주기를 조정함

## 라. 등급 결정 및 평가주기

- 평가결과 등급은 현장평가 결과(100%)를 바탕으로 하되, 아래 등급 조정 사유 해당 여부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결정한다.
- 선정통보월 이후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최하위 등급 조정 사유, 기타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개선 여부 등을 검토하여 종합평가위원회에서 최하위 등급(D등급)으로 조정함

### ■ 최하위 등급 조정 사유 ■

-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
- ②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③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았거나 제45조, 제45조의2 또는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아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3백만원 이상 비용 및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은 어린이집
  - 6개월 이상 운영정지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정지 6개월 이상 또는 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 ④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거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 ⑤ 평가 진행 일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⑥ 평가와 관련하여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 ⑦ 현장평가 시 발견한 어린이집 운영기준 개선필요사항이 종합평가 전까지 개선되지 않은 경우
- ⑧ 사전점검사항 미준수 항목이 종합평가 전까지 개선되지 않은 경우

- 선정통보 직전월 말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중대한 법 위반이력사항(기본사항-위반이력사항)이 발생한 경우 차하위 등급으로 조정함

※ 다만, 법 위반 및 행정처분으로 인해 최하위 등급(D등급)으로 조정된 어린이집은 차기 평가 시 차하위 등급으로 조정하지 않음

- 결과발표 이후, 평가과정 중 발생한 법 위반 및 행정처분 등이 추가로 확인되어 최종등급 및 평가주기 조정이 필요한 경우, 종합평가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음
  - 이 외에 종합평가위원회에서 등급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의하여 어린이집의 평가등급 및 평가주기를 조정함
- 어린이집 평가등급은 4등급(A, B, C, D)으로 구분하며, A, B등급은 3년, C, D등급은 2년의 평가주기를 부여한다.

■ 평가등급 기준 및 평가주기 ■

등급구분(정의)		등급 부여기준	평가주기
A	국가 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모든 영역에서 충족함	4개 영역 모두 '우수'인 경우 (필수지표 및 요소 충족)	3년
B	국가 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대부분 충족함	'우수' 영역이 3개 이하이며 '개선필요' 영역이 없는 경우	
C	국가 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 대비 부분적으로 개선이 필요함	'개선필요' 영역이 1개 있는 경우	2년
D	국가 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 대비 상당한 개선이 필요함	'개선필요' 영역이 2개 이상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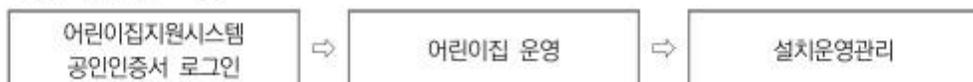
## 5) 결과공표

### 가. 결과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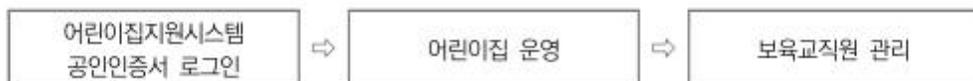
- 어린이집 평가결과는 매월 15일 전·후에 어린이집 지원시스템 등을 통해 통보한다.
- 평가결과 통보 전
  - 통보 전 어린이집 정보 확인
    -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의 어린이집 정보는 어린이집 관리 및 결과통보, 평가 후 관리에 활용되므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하여야 함

### 어린이집 정보 확인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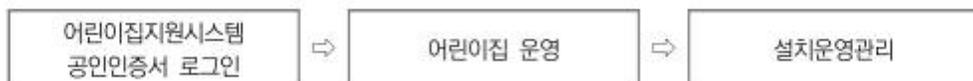
- 어린이집명, 어린이집 주소, 원장 및 대표자명 : 확인 후 수정은 시·군·구 보육담당 공무원에게 요청



- 보육교직원 현황 : 보육교직원 변동사항은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내 [어린이집 운영] - [보육교직원 관리] 메뉴에서 수정



- 원장 휴대전화 번호 : 어린이집 원장의 휴대전화 번호는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내 [어린이집 운영] - [설치운영관리] 메뉴에서 수정



- 결과통보 전 설문지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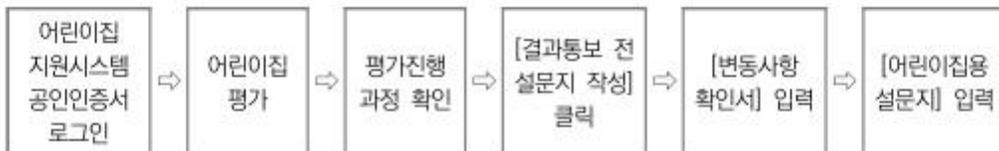
- 평가결과 통보 전 어린이집에서는 변동사항 확인서 및 어린이집용 설문지를 작성하여야 함

### 결과통보 전 설문지 작성 방법

- 결과통보 전 설문지는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내 [어린이집 평가] - [평가진행과정 확인] 메뉴에서 '결과통보 전 설문지 작성'을 클릭하여 입력

- [변동사항 확인서] 평가대상 선정통보일 이후 행정처분, 대표자 변경 등 변동사항 발생 여부 확인

- [어린이집용 설문지] 평가과정 전반에 대한 의견수렴용으로 평가 제도 발전을 위한 자료로 활용



※ 평가결과 통보 전 변동사항 확인서, 어린이집용 설문지 입력이 모두 완료되어야 평가결과 확인 가능

※ [변동사항 확인서] 작성 시 법 위반(아동학대 포함) 및 행정처분은 대표자 변경 및 보육교직원 면직여부와 관계없이 사유 발생 사실을 확인하여 제출(수사, 재판 계류 중에 있는 경우 포함)

## ● 평가결과 확인

- 어린이집 및 영역별 등급은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내 어린이집 평가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평가결과 확인 방법

- 평가결과는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어린이집지원시스템 업무연락 및 개별 어린이집으로 통보함
  -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내 [어린이집 평가] - [평가진행과정 확인] 메뉴에서 '평가 결과 확인'을 클릭하여 확인



## 나. 소명

### ● 평가받은 어린이집은 평가결과에 대한 소명신청이 가능하다.

- 평가결과 통보월의 말일까지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소명신청이 가능함(소명 신청서와 관련 증빙자료 제출)

### ● 소명절차

소명신청 ⇒ 사실조사 ⇒ 소명심사위원회 개최 ⇒ 의결(인정/불인정) ⇒ 종합평가위원회 개최 ⇒ 결과통보 및 후속조치

### ● 소명결과

- 소명결과는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개별 통보함

## 다. 결과공표

- 평가결과(A~D등급) 등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 이력정보를 통합정보공시 홈페이지(www.childinfo.go.kr)를 통해 공개한다.
- (공표 시기) 결과통보 후 익월 1일
  - ※ 평가제가 시행되는 '19.6.12. 이후 해당 결과공표 내용 반영(단, 인증유지 어린이집은 기존 공표내용 유지)
- (공표 내용) 등급 구분 및 정의, 어린이집 및 영역별 등급, 평가결과서, 지역(시·군·구) 및 설립유형, 전국 어린이집 등급 분포 등
  - ※ 소명신청 어린이집은 해당 과정 완료 후 최종 결과 공표

■ 어린이집 평가 결과공표 ■

구분		결과공표 내용
평가제 시행 이후 평가 정보	평가결과 A~D등급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평가 이후 법 위반·행정처분 발생	D등급(등급조정)*
	신규개원	-
평가제 시행 이전 인증 정보	미인증(평가참여 이력 없음)	-
	인증유지	(평가제 결과 확정 이전까지 기존 공표내용 유지)
	인증취소·인증종료·인증유효기간 만료	인증취소/인증종료/인증유효기간 만료

\* 'D등급(등급조정)'은 통합정보공시 홈페이지에 최하위 등급 조정에 포함되는 사유 안내

## 라. 결과활용

- 평가결과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관리, 보육사업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2항).
  - ※ 2회 연속 D등급 어린이집은 지도점검 대상 우선 선정

## 6) 평가 후 관리

### 가. 연차별 자체점검 및 보고서 제출

- 평가결과 A, B등급 어린이집은 평가주기 동안 자체점검위원회를 구성하고,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결과통보 후 익년도부터 매년 1회 정해진 기간 내에 어린이집지원시스템으로 입력·제출한다.
  - 자체점검 시 원장, 보육교사, 원아 부모 각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자체점검위원회 (3~7인 이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수행 가능)를 구성하여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어린이집의 운영 전반을 점검함
  -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에는 평가항목별 점검결과(Y/N), 총평, 법 위반 및 행정 처분 이력사항 등을 작성함
  - 기존 인증유지 어린이집은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대상이므로 해당 시기에 자체점검보고서를 제출함
-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는 평가결과 통보시기(상·하반기)에 따라 제출한다.

구 분	상반기	하반기
제출대상 (평가결과 A, B등급)	평가결과 통보시기가 1~6월인 어린이집	평가결과 통보시기가 7~12월인 어린이집
보고서 제출 시기	5.1. ~ 5.31.	11.1. ~ 11.30.

-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확인 점검을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한다.

### 나. 사후방문지원

-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사후방문지원을 실시하여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질 향상을 지원한다.
- (대상) 평가결과 C, D등급을 받은 어린이집 의무 참여
  - ※ 평가결과 A, B등급 어린이집에서 희망하는 경우 신청 가능

- (내용) 평가결과 개선이 필요한 지표, 보육과정 운영 등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방문지원, 교육 및 정보 제공 등을 지원한다.
- 사후지원가가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사항 피드백, 향후 질 유지 방안 수립 및 실행과정 등을 지원함
- 어린이집에서는 향후 질 유지·관리를 위한 자체개선보고서를 제출하고, 한국보육진흥원은 평가지표 및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함

#### 다. 평가 관련 보육교직원 교육, 정보 제공

- 한국보육진흥원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평가지표 관련 지식과 정보를 교육(온라인 포함) 등을 통해 제공한다.

#### 라. 확인점검

- 평가받은 어린이집 중 일부를 불시 방문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확인한다.
- (법적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5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 (대상) 평가 후(또는 인증유지) 어린이집에서 아래의 사유 중 한 가지 이상 발생 되는 경우

- 평가지표와 관련된 민원 발생 어린이집
- 평가 후 법 위반 및 행정처분이 발생한 어린이집 중 인증취소사유 및 등급조정 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 어린이집
  - \* 법 제45조의2(과징금 처분), 3백만원 미만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6개월 미만 운영정지 등
-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를 제출기한 내 미제출한 어린이집
- 평가 후 대부분의 교사가 이직한 어린이집
- 정보공시 항목(7개 항목, 18개 범위)을 미공시하거나 공시시기를 미준수한 어린이집
- 평가지표 3영역 건강·안전 필수요소 8개 중 4개 이상 미충족한 어린이집
- 종전 운영자 변동 없이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전 평가(인증) 결과를 송계한 어린이집
- 확인점검\* 결과 1개 이상 영역이 '개선필요'인 어린이집
  - \* '21.3.1 이후 실시한 확인점검

● (확인내용) 평가지표 전체 영역(4영역 18지표 59항목), 어린이집 운영기준 (영유아 재원사항, 보육교직원 근무상황)

※ 확인점검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시정 또는 변경명령(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4의6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 또는 점검을 받은 경우, 최하위 등급(D등급) 부여 및 평가주기 조정, 시정 또는 변경명령(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4의6호) 가능

● 결과활용

• 확인점검 결과 1개 이상 영역이 '개선필요'이거나 확인점검을 거부한 경우 지자체로 통보,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질적 수준 향상 지원

• 2회 이상 연속해서 확인점검 결과 1개 이상 영역이 '개선필요'인 경우 평가등급 및 평가주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사후방문지원 연계

※ 기존 인증유지 중인 어린이집의 경우, 확인점검 결과 2회 연속 1개 이상 영역이 '개선필요'이거나 거부 등으로 확인점검이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 당초 인증유효기간을 6개월 감축할 수 있음

● 결과통보

• 한국보육진흥원은 확인점검 결과를 어린이집으로 통보하고, 어린이집 운영기준 개선 필요사항이 확인된 경우, 1개 영역 이상이 '개선필요'이거나 확인점검을 거부한 경우에는 시·도 및 시·군·구에 통보

• 시·군·구는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통보받은 확인점검 결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고, 그 결과를 시·도 및 한국보육진흥원에 통보

- 운영기준 개선필요사항이 확인된 경우 → 개선여부 확인

- 1개 영역 이상에서 '개선필요'인 경우 → 개선 지원 계획

- 확인점검을 거부한 경우 → 시정명령(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4의6호)

## 마. 최하위 등급(D등급) 조정

- 평가받은 어린이집에서 법 위반 및 행정처분 등이 발생한 경우 기존 평가등급을 최하위 등급(D등급)으로 조정한다.

- (법적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 (평가주기) 최하위 등급 조정 통보일로부터 2년

### ● 최하위 등급으로 조정되는 사유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

- 평가과정 중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등원 거부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 평가과정 중 어린이집에서 제시한 서류나 진술 등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 어린이집과 현장평가자와의 이해관계가 드러난 경우
-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았거나 제45조, 제45조의2 또는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아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3백만원 이상 비용 및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은 어린이집
- 6개월 이상 운영정지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 6개월 이상 또는 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거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 ※ 다만,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해당 어린이집의 아동학대에 대한 자발적 신고 및 결정적 증거 최초 제공(부모의 아동학대 의심 정황 제보·신고 이전에 이행한 경우에 한함), 성실한 조사 협조,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상시적 예방 노력(모니터링, 아동학대 예방 교육 등)이 인정될 경우 최하위 등급 조정 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음

## ● 처리절차 및 지자체 업무

- ① 시·군·구는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에서 아래의 법 위반 및 행정처분 등이 발생한 경우 7일 이내에 발생 사실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에 통보함
  -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행정처분(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 제45조, 제45조의2, 제46조, 제47조, 제48조)을 받은 경우
  -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거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 시·군·구는 상기의 법 위반 및 행정처분사항 등이 발생 시 등급조정 대상임을 어린이집에 안내
- ② 시·도는 시·군·구로부터 통보받은 법 위반 및 행정처분을 확인한 후 발생 사실 및 관련 서류를 7일 이내에 한국보육진흥원에 통보함
- ③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는 시·도로부터 통보받은 법 위반 및 행정처분 중 최하위 등급 조정 대상 사유를 확인하여 해당 어린이집에 최하위 등급 처분의 내용을 사전 통지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함
  - ※ 해당 어린이집은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 ④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는 의견제출 기한 경과 후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최하위 등급 처분 확정 및 관련 조치함
  - 보건복지부는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처분서를 통지하고, 시·도 및 한국보육진흥원에 최하위 등급 조정 처분내용을 통보함

※ 최하위등급 조정 결과 공시 3개월 경과 후 사후방문지원 대상으로 통보하고 사후방문 지원 실시

업무주체	주요업무	내용
어린이집	-	• 법 위반 및 행정처분 발생
시·도 및 시·군·구	법 위반 및 행정처분 발생 통보	• 법 위반 및 행정처분 확인 후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에 통보 ※ 행정지원시스템에 법 위반 및 행정처분 사항 (법조항, 행정처분내용)을 구체적으로 입력
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	처분 사전통지 후 최하위 등급 조정 처분 통지	• 최하위 등급 조정 사유 확인 후 어린이집에 처분 사전통지 • 처분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기간 경과 후 어린이집에 처분서 통지 • 시·도 및 시·군·구에 최하위 등급 처분내용 통보 ※ 단, 기존 인증유지 어린이집은 인증취소
한국보육진흥원	정보공시 변경 사후방문지원 연계	• 조정된 등급으로 결과 공시 • 3개월 경과 후 사후방문지원 대상 통보, 사후방문지원 실시

[그림 5] 최하위 등급 조정 절차 업무흐름도

## 바. 평가주기 조정관리

- 평가받은 어린이집에서 다음 중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어린이집의 평가주기를 조정하여 사유발생일(변경인가일, 재개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후 선정통보를 진행한다.

※ 단, 매월 평가진행 개소수에 따라 평가월은 조정될 수 있음

-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 단, C, D등급을 받은 어린이집에서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사후방문지원 완료 이후 선정통보를 진행함

※ 2011.8.4. 개정된 영유아보육법[법률 제11002호]에 따른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 등/직장/협동어린이집 또는 타 법령에 따른 법인·단체가 설치한 어린이집의 경우 대표자가 변경되었더라도 복지부 확인 결과 어린이집의 실소유권이 기존 기관/단체/법인 명의로 동일한 경우 평가주기 조정 대상에서 제외함

- 어린이집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어린이집의 운영을 6개월 이상 중단 후 재개한 경우

● 평가주기 조정에도 불구하고 평가주기는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처리절차 및 지자체 업무

- ① 시·군·구는 평가받은 어린이집에 인가변동사항 등 평가주기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발생 사실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에 통보함
- ② 시·도는 시·군·구로부터 통보받은 평가주기 조정사유를 확인한 후 발생 사실 및 관련 서류를 즉시 한국보육진흥원에 통보함
- ③ 한국보육진흥원은 시·도로부터 통보받은 평가주기 조정사유 확인 후 평가대상 통보 절차를 진행함

업무주체	주요업무	내용
어린이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가변동사항 등 평가주기 조정사유(대표자변경, 소재지변경, 6개월 이상 운영 중단) 발생</li> </ul>
시·도 및 시·군·구	평가주기 조정사유 발생 안내 및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가주기 조정사유 확인 후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업무연락을 통해 해당 어린이집에 사유 발생 안내</li> <li>평가주기 조정사유 확인 후 한국보육진흥원에 통보 ※ 행정지원시스템에 변경내용(변경인가사항 등) 반드시 입력</li> </ul>
한국보육진흥원	평가주기 조정 사유 확인 및 대상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가주기 조정사유 확인</li> <li>평가대상 선정통보(1차) 및 확정통보(2차) 진행</li> </ul>

※ 단, 인증유지어린이집의 경우, 인증유효기간 종료 처리에 해당하는 사유는 인증유효기간 종료 처리하고 평가시기 통보

[그림 6] 평가주기 조정절차 업무흐름도

## 7) 평가 또는 확인점검 거부(방해 또는 기피) 시 조치

### ● 법적근거

- 정당한 이유 없이 평가 또는 확인점검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시정 또는 변경명령 등 행정처분 대상임
  - 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4의6호에 근거하여,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1차) 운영정지 3개월, (2차) 운영정지 6개월, (3차) 운영정지 1년의 행정처분 대상임

### ● 평가 또는 확인점검 거부(방해 또는 기피) 사유

- 대표자 또는 원장이 평가동의 절차에 응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는 등 평가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
- 평가 또는 확인점검에 관련된 서류(자체점검보고서, 평가지표 관련 서류 등)를 의도적으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
-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어린이집의 출입을 막거나, 현장평가(또는 확인점검) 진행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거친 말이나 행동 또는 협박 등의 위력을 가하여 평가 직원(현장평가자 등)을 압박하는 경우
- 기타 다른 방법으로 평가 또는 확인점검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하는 경우 등

### ● 평가 또는 확인점검 거부(방해 또는 기피) 시 처리절차

- 한국보육진흥원은 아래와 같이 평가 또는 확인점검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어린이집에 대해 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4의6호에 근거하여 시정 또는 변경명령 등 행정처분 대상임을 안내하고, 보건복지부에 해당 어린이집 명단을 보고함
  - ※ 현장평가(또는 확인점검) 시 진행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발생사실에 대해 현장평가자가 확인서 작성 및 대표자 또는 원장에게 서명·확인을 받음
  - ※ 현장평가(또는 확인점검) 확인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 평가(점검)거부 사유를 현장평가자(또는 확인점검자)가 직접 작성하고 현장평가자(또는 확인점검자)가 서명하고 종료함

- 보건복지부는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명단을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에 통보하고 시·군·구는 시정 또는 변경명령 등 행정처분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함
- 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추후 해당 어린이집을 평가대상으로 통보함

업무주체	주요업무	내용
한국보육진흥원	어린이집이 평가 또는 확인점검 거부 시 관련 사항 안내 및 보건복지부에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 또는 확인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어린이집에 시정 또는 변경명령 등 행정처분 대상임을 안내</li> <li>• 보건복지부에 해당 어린이집 명단 보고</li> </ul>
↓		
보건복지부	지자체에 해당 어린이집 명단 및 지자체 조치사항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명단 및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조치사항 통보</li> </ul>
↓		
시·도 및 시·군·구	어린이집 명단 확인 및 시정 또는 변경명령 및 행정처분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도)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명단 확인</li> <li>• (시·군·구) 해당 어린이집에 시정 또는 변경명령 및 행정처분 시행 후 보건복지부와 시·도, 한국보육진흥원에 보고</li> </ul>

[그림 기] 평가 또는 확인점검 거부(방해 또는 기피) 시 처리절차

## 8) 경과조치

### 가. 인증취소 및 인증유효기간 종료

- 기존 인증유지 어린이집에서 평가인증취소 또는 인증유효기간 종료 사유 발생 시, 관련 법률\*에 따라 구(舊)법을 적용하여 처리한다.

\* 영유아보육법(법률 제15892호 '18.12.11) 부칙 제4조(평가인증 어린이집에 관한 경과조치)

- 인증취소 절차 및 지자체 업무

- ① 시·군·구는 인증 어린이집에 인증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7일 이내에 발생 사실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에 통보함

※ 시·군·구는 인증취소 사유 발생 시 이를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업무연락을 통해 해당 어린이집에 안내

- ② 시·도는 시·군·구로부터 통보받은 인증취소 사항을 확인한 후 발생 사실 및 관련 서류를 7일 이내에 한국보육진흥원에 통보함
- ③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는 시·도로부터 통보받은 인증취소 사항을 확인한 후, 해당 어린이집에 인증취소 처분의 내용을 사전 통지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함
  - 해당 어린이집은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④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는 의견제출 기한 경과 후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인증취소 처분확정 및 관련 조치함
  - 보건복지부는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처분서를 통지하고, 시·도에 인증취소 처분확정 사실 안내 및 인증서·현판 회수를 요청함
    - ※ 인증취소 처분시점부터 인증취소 효력 발생
  - 인증취소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은 시·군·구로 인증서 및 인증현판을 반납함
- ⑤ 시·군·구는 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의 인증서 및 인증현판을 인증취소 처분 사실을 통보받은 즉시 회수·폐기함

업무주체	주요업무	내용
어린이집	-	• 인증취소 사유 발생
시·도 및 시·군·구	인증취소 사유 발생 통보	• 인증취소 사유 확인 후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에 통보 • 인증취소 사유 확인 후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업무연락을 통해 해당 어린이집에 인증취소 사유 발생 안내
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	처분 사전통지 후 인증취소 처분 통지	• 인증취소 사유 확인 후 어린이집에 처분 사전통지 • 사전통지 기간 경과 후 어린이집에 처분서 통지 • 시·도 및 시·군·구에 인증취소 처분내용 통보 및 협조 요청
어린이집 시·도 및 시·군·구	인증취소 사후처리	• 인증서 및 인증현판 회수

[그림 8] 인증취소 절차 업무흐름도

## ● 인증유효기간 종료 절차 및 지자체 업무

- ① 시·군·구는 인증 어린이집에 인증유효기간 종료 사유가 발생한 경우 7일 이내에 발생 사실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에 통보함
- ② 시·도는 시·군·구로부터 통보받은 인증유효기간 종료 사항을 확인한 후 발생 사실 및 관련 서류를 7일 이내에 한국보육진흥원에 통보함
- ③ 한국보육진흥원은 시·도로부터 통보받은 사항 확인 후 인증유효기간 종료 처리 및 관련 조치함
  - 해당 시·도에 인증유효기간 종료 처리 결과 안내 및 인증서·현판 회수 조치 요청
  - 해당 어린이집에 인증유효기간 종료 처리 결과 안내(보육통합정보시스템 업무연락)
- ④ 시·군·구는 인증유효기간이 종료된 어린이집의 인증서 및 인증현판을 인증유효기간 종료 사실을 통보받은 즉시 회수·폐기함

업무주체	주요업무	내용
어린이집	-	• 인증유효기간 종료 사유 발생
시·도 및 시·군·구	인증유효기간 종료 사유 발생 통보	• 인증유효기간 종료 사유 확인 후 한국보육진흥원에 통보
한국보육진흥원	인증유효기간 종료 처리 및 관련 조치	• 인증유효기간 종료 사유 확인 후 처리 • 해당 시·도에 인증유효기간 종료 처리 결과 안내 및 인증서·현판 회수 협조 요청 • 해당 어린이집에 인증유효기간 종료 처리 결과 안내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업무연락)
어린이집 시·도 및 시·군·구	인증유효기간 종료 사후처리 협조	• 인증서 및 인증현판 회수

※ 인증유효기간이 종료되는 대표자 변경, 어린이집의 운영을 6개월 이상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만 통보 (시·군·구→시·도→한국보육진흥원)

[그림 9] 인증유효기간 종료 절차 업무흐름도

## 참고 인증유지 어린이집에서 인증취소 또는 인증유효기간 종료 사유 발생 시 구(舊)법의 규정에 따름

- (처리과정) 지자체에서는 인증유지 어린이집에서 인증취소 또는 인증유효기간 종료 사유 발생 시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로 통보(시·군·구 → 시·도 →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
-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 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증을 받은 경우
    - 어린이집과 현장평가자의 이해관계가 드러난 경우

- 어린이집의 대표자 및 보육교직원이 현장평가자와 직계 존·비속의 관계인 경우
  - 현장평가자의 자녀가 해당 어린이집에 재원한 경험이 있는 경우
  - 현장평가자가 해당 어린이집에 근무한 적이 있는 경우
  - 원장이 현장평가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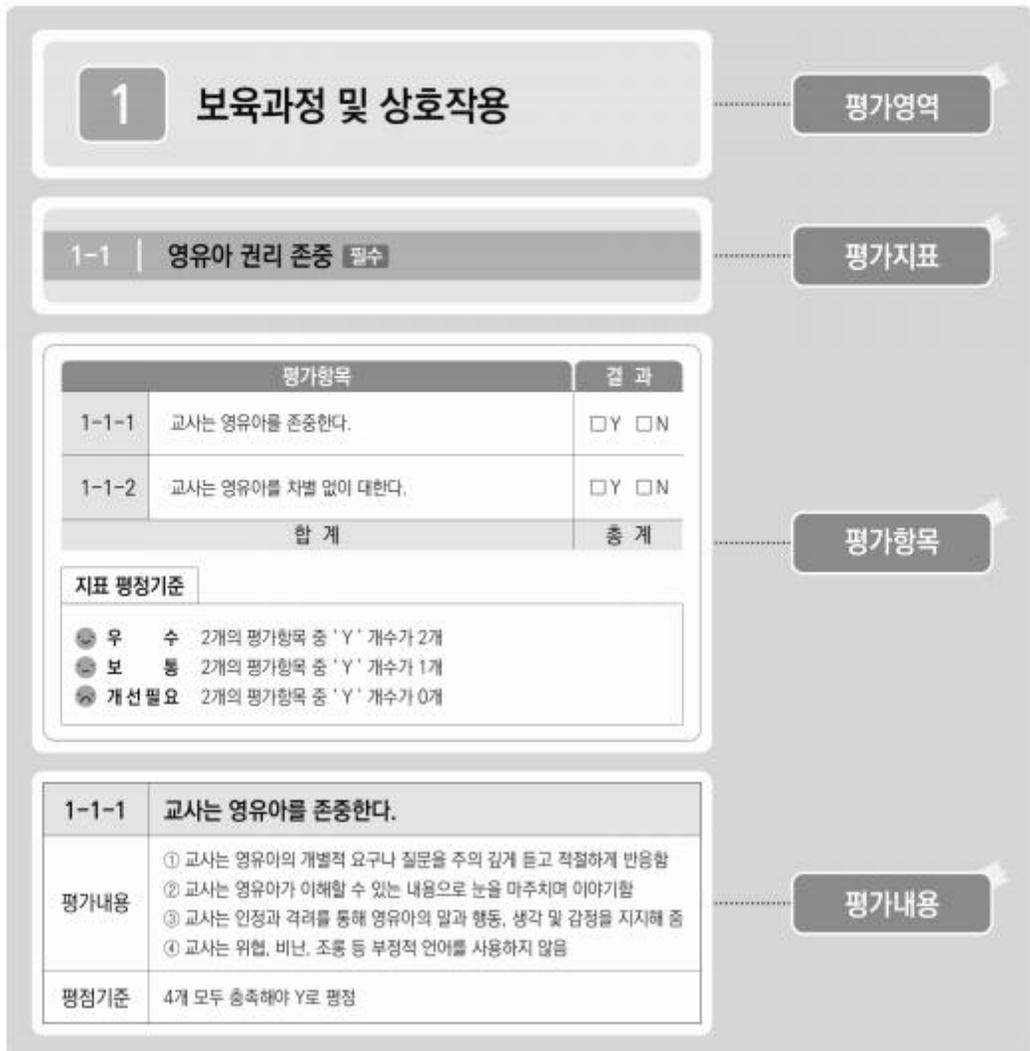
- 참여과정 중 어린이집에서 제시한 서류나 진술 등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 ② 대표자 또는 원장이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③ 인증 후 영유아보육법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명령
  - 영유아보육법 제45조 또는 제46조부터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 ※ 영유아보육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
- ④ 대표자, 원장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 인증유효기간 종료
  - ①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변경 전까지 인증유효
  - ② 어린이집의 운영을 6개월 이상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어린이집 휴지 신고 후 6개월이 되는 날 또는 폐지 신고일 전일까지 인증유효

### 3. 평가지표

#### 1) 평가지표의 구성 체계

##### 가. 구성 체계

- 평가지표는 평가영역 > 평가지표 > 평가항목 > 평가내용(평가요소) 순으로 구성되었다.



## 나. 평가방법

- 평가지표의 평가방법은 관찰, 면담, 기록 확인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관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환경, 보육과정, 상호작용 등에 대한 관찰을 진행함</li> <li>• 등원에서 하원까지 일과 동안 이루어짐</li> </ul>
	면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장과 교사 등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함</li> <li>• 평가지표(항목·요소)에 관한 실행 여부 및 관련 내용을 확인함</li> </ul>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지표(항목·요소)에서 실행 여부 및 내용 확인을 위해 요구되는 관련 기록을 확인함</li> </ul>

- 면담의 경우, 면담 대상을 다음과 같이 표기하였다.

- (원장 / 교사 / 조리원 / 운전자 / 교육참여자)  
: '원장 / 교사 / 조리원 / 운전자 / 교육참여자'를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함
- (공통) : '원장과 교사'를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함

- 기록 관련 확인기간은 다음과 같다.

- 보육일지 : 현장평가일 이전 1개월부터
- 그 외의 기록 : 현장평가일 이전 3개월부터  
※ 단, 1년 단위로 확인이 이루어지는 지표의 경우 전년도 기록을 확인할 수 있음

## 다. 용어설명

- 평가대상 중 임용된 보육교직원은 담임교사, 연장보육 전담교사, 기타 보육 교직원을 모두 포함한다.
- 평가대상 중 '장애아전문'과 '장애영유아'를 구분하여 표기하였다.
  - 장애아전문 :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평정함

<예>

1-2-4	<b>바깥놀이 시간을 매일 충분히 배정하여 운영한다.</b>
평가내용	① 매일 바깥놀이를 기준시간 이상으로 배정하여 운영함 <b>영아</b> 만0세는 주 3회, 30분 이상 / 만1, 2세는 매일 30분 이상 <b>유아</b> 매일 1시간 이상 <b>장애아전문</b> 주 1회 이상 장애유형, 장애정도, 발달수준에 따라 융통성 있게 운영

- 장애영유아 : 장애아전문 뿐만 아니라 장애아통합 어린이집(특수교사나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가 배치된 경우)도 평정대상에 포함됨

<예>

1-2-6	<b>장애영유아 장애영유아를 위한 관련 서비스(치료지원 포함)를 일과 중에 통합적으로 제공한다.</b>
평가내용	① 장애영유아를 위한 관련 서비스(치료지원 포함)를 계획, 제공하고 있음 ② 장애영유아를 위한 관련 서비스(치료지원 포함)를 장애영유아가 속해 있는 반의 일과와 연계하거나 일과 내에서 제공하고 있음

## 2) 평가지표의 구성

### ● 평가영역 및 평가항목 수

평가영역(항목수)	평가지표	평가항목수
1.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18)	1-1. 영유아 권리 존중 <b>필수</b>	2
	1-2. 보육계획 수립 및 실행	6
	1-3. 놀이 및 활동 지원	3
	1-4. 영유아 간 상호작용 지원	4
	1-5. 보육과정 평가	3
2.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14)	2-1. 실내 공간 구성 및 운영	4
	2-2. 실외 공간 구성 및 운영	3
	2-3. 기관 운영	4
	2-4.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3
3. 건강·안전(15)	3-1. 실내외 공간의 청결 및 안전	3
	3-2. 급·간식	3
	3-3.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관리	3
	3-4. 등·하원의 안전	3
	3-5. 안전교육과 사고예방	3
4. 교직원(12)	4-1. 원장의 리더십	3
	4-2.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3
	4-3. 보육교직원의 처우와 복지	3
	4-4.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제고	3

\* 3-2, 3-4, 3-5 지표 내 필수요소 8개 포함

## ● 어린이집 등급 평정방식

- (평가지표) 각 지표별 평가항목의 '총족' 개수에 따라 3개 등급(우수, 보통, 개선필요) 중 1개 부여  
\* 평가항목은 체크리스트 방식에 의해 '총족(Y)' 또는 '미총족(N)'에 체크

평가항목 수	지표 평정		
	총족(Y) 항목 수		
2	2개	1개	0개
3	3개	2개	1개 이하
4	4개	2~3개	1개 이하
5	5개	3~4개	2개 이하
6	6개	3~5개	2개 이하

↓	↓	↓
우수	보통	개선필요

- (평가영역) 각 영역별 평가지표 중 '우수', '개선필요' 지표 개수에 따라 3개 등급(우수, 보통, 개선필요) 중 1개 부여  
\* 평가지표 중 '개선필요' 등급이 하나라도 있을 경우, '개선필요' 등급 부여

평가영역(지표 수)	영역 평정		
1.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5)	'우수' 지표 4개 이상(필수 포함)	우수 및 개선필요 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개선필요' 지표 1개 이상
2.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4)	'우수' 지표 3개 이상		
3. 건강·안전(5)	'우수' 지표 4개 이상(필수 포함)		
4. 교직원(4)	'우수' 지표 3개 이상		

↓	↓	↓
우수	보통	개선필요

- (어린이집 등급) 4개 평가영역 중 '우수', '개선필요' 등급 개수에 따라 어린이집 등급(A, B, C, D) 중 1개 부여

### 〈평가등급 기준 및 평가주기〉

등급구분	등급 부여기준	평가주기
A	4개 영역 모두 '우수'인 경우(※ 필수지표 및 요소 모두 총족)	3년
B	'우수' 영역이 3개 이하이며, '개선필요' 영역이 없는 경우	
C	'개선필요' 영역이 1개 있는 경우	2년
D	'개선필요' 영역이 2개 이상인 경우	

● 어린이집 등급평정(지표 및 영역)

구분	지표 평정				영역 평정			
	항목 수	우수	보통	개선필요	지표 수	우수	보통	개선필요
1-1. 영유아 권리 존중	2개	2개	1개	0개 이하	5개	'우수' 지표 4개 이상 (필수 포함)	우수 및 개선필요 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개선필요' 지표 1개 이상
1-2. 보육계획 수립 및 실행*	5개	5개	3~4개	2개 이하				
1-3. 놀이 및 활동 지원	3개	3개	2개	1개 이하				
1-4. 영유아 간 상호작용 지원	4개	4개	2~3개	1개 이하				
1-5. 보육과정 평가	3개	3개	2개	1개 이하				
2-1. 실내 공간 구성 및 운영	4개	4개	2~3개	1개 이하	4개	'우수' 지표 3개 이상	우수 및 개선필요 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개선필요' 지표 1개 이상
2-2. 실외 공간 구성 및 운영	3개	3개	2개	1개 이하				
2-3. 기관 운영	4개	4개	2~3개	1개 이하				
2-4.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3개	3개	2개	1개 이하				
3-1. 실내외 공간의 청결 및 안전	3개	3개	2개	1개 이하	5개	'우수' 지표 4개 이상 (필수 포함)	우수 및 개선필요 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개선필요' 지표 1개 이상
3-2. 급·간식	3개	3개	2개	1개 이하				
3-3.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관리	3개	3개	2개	1개 이하				
3-4. 등·하원의 안전	3개	3개	2개	1개 이하				
3-5. 안전교육과 사고예방	3개	3개	2개	1개 이하				
4-1. 원장의 리더십	3개	3개	2개	1개 이하	4개	'우수' 지표 3개 이상	우수 및 개선필요 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개선필요' 지표 1개 이상
4-2.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3개	3개	2개	1개 이하				
4-3. 보육교직원의 처우와 복지	3개	3개	2개	1개 이하				
4-4.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제고	3개	3개	2개	1개 이하				

\* 1-2. 보육계획 수립 및 실행 지표에서 장애영유아는 1항목 추가

※ 1, 3영역의 경우, 해당영역이 '우수' 등급으로 평정되기 위해서는 필수지표 및 필수요소를 반드시 충족하여야 함

● 평가지표 세부 평가항목

평가 영역	평가 지표	평가항목
1. 보육 과정 및 상호 작용 (18)	1-1 영유아 권리 존중 (2) <b>필수</b>	1. 교사는 영유아를 존중한다. 2. 교사는 영유아를 차별 없이 대한다.
	지표 등급	우수 : 'Y'가 2개, 보통 : 'Y'가 1개, 개선필요 : 'Y'가 0개
	1-2 보육 계획 수립 및 실행 (6)	1. 표준보육과정을 바탕으로 어린이집의 철학을 반영한 보육계획을 수립한다. 2. 영유아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일상경험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3. 하루 일과에서 영유아의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4. 바깥놀이 시간을 매일 충분히 배정하여 운영한다. 5. 특별활동은 운영 지침에 따라 운영한다. 6. <b>장애영유아</b> 장애영유아를 위한 관련 서비스(치료지원 포함)를 일과 중에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지표 등급	(일반) 우수 : 'Y'가 5개, 보통 : 'Y'가 3~4개, 개선필요 : 'Y'가 2개 이하 (장애) 우수 : 'Y'가 6개, 보통 : 'Y'가 3~5개, 개선필요 : 'Y'가 2개 이하
	1-3 놀이 및 활동 지원 (3)	1. 교사는 놀이와 활동이 영유아의 자발적 선택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격려한다. 2. 교사는 영유아의 놀이 상황을 관찰하면서 놀이와 관련된 상호작용을 한다. 3. 영유아의 다양한 놀이와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지표 등급	우수 : 'Y'가 3개, 보통 : 'Y'가 2개, 개선필요 : 'Y'가 1개 이하

평가 영역	평가 지표	평가항목
1. 보육 과정 및 상호 작용 (18)	1-4 영유아 간 상호 작용 지원 (4)	<p>1. 교사는 영유아의 감정에 공감하고 스스로의 감정을 다룰 수 있도록 돕는다.</p> <p>2. 교사는 영유아가 일상에서 자신의 의견, 생각 등을 토래와 나눌 수 있도록 격려한다.</p> <p>3. 교사는 영유아가 적절한 약속과 규칙을 지키도록 격려한다.</p> <p>4. 교사는 영유아 간 다툼이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다양한 해결방식을 사용한다.</p>
	지표 등급	우수 : 'Y'가 4개, 보통 : 'Y'가 2~3개, 개선필요 : 'Y'가 1개 이하
	1-5 보육 과정 평가 (3)	<p>1. 반별 보육일지에 하루 일과 및 놀이실행에 대한 기록이 있고,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다음 놀이 지원 및 활동 계획에 반영한다.</p> <p>2. 영유아의 일상생활, 실내외 놀이에 대한 관찰 내용을 기록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과 변화를 평가한다.</p> <p>3. 원장은 각 반별 보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를 통해 어린이집 전체 보육과정 운영을 파악하고 있다.</p>
	지표 등급	우수 : 'Y'가 3개, 보통 : 'Y'가 2개, 개선필요 : 'Y'가 1개 이하
1영역 등급	(우수) '우수' 등급 지표가 4개 이상(필수 포함) (보통) '우수' 및 '개선필요' 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개선필요) '개선필요' 등급 지표가 1개 이상	

평가 영역	평가 지표	평가항목
2. 보육 환경 및 운영 관리 (14)	2-1 실내 공간 구성 및 운영 (4)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보육실 내 놀이영역은 영유아의 연령, 발달특성 및 놀이를 반영하여 구성한다.</li> <li>2. 실내 시설 및 설비가 영유아의 발달수준에 적합하다.</li> <li>3. 영유아의 요구를 충족하는 보육실 이외의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li> <li>4. 비품과 활동자료를 보관하는 별도의 공간이 있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li> </ol>
	지표 등급	우수 : 'Y'가 4개, 보통 : 'Y'가 2~3개, 개선필요 : 'Y'가 1개 이하
	2-2 실외 공간 구성 및 운영 (3)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옥외놀이터 등을 구비하고 있다.</li> <li>2. 영유아의 발달을 지원하는 다양한 놀이 및 활동자료가 준비되어 있다.</li> <li>3.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다양한 바깥놀이 및 활동이 이루어진다.</li> </ol>
	지표 등급	우수 : 'Y'가 3개, 보통 : 'Y'가 2개, 개선필요 : 'Y'가 1개 이하
	2-3 기관 운영 (4)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모든 반을 편성 규정에 맞게 운영하고 있다.</li> <li>2. 어린이집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부모에게 안내한다.</li> <li>3. 신규 보육교직원에게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있다.</li> <li>4. 신입 영유아 적응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li> </ol>
	지표 등급	우수 : 'Y'가 4개, 보통 : 'Y'가 2~3개, 개선필요 : 'Y'가 1개 이하

평가 영역	평가 지표	평가항목
2. 보육 환경 및 운영 관리 (14)	2-4 가정 및 지역 사회와의 연계 (3)	<p>1. 어린이집을 개방하여 다양한 부모참여와 교육이 이루어진다.</p> <p>2. 평소 가정과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고 정기적인 개별면담을 통해 가족을 지원한다.</p> <p>3.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p>
	지표 등급	우수 : 'Y'가 3개, 보통 : 'Y'가 2개, 개선필요 : 'Y'가 1개 이하
2영역 등급		(우수) '우수' 등급 지표가 3개 이상 (보통) '우수' 및 '개선필요'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개선필요) '개선필요' 등급 지표가 1개 이상

평가 영역	평가 지표	평가항목
3. 건강 · 안전 (15)	3-1 실내외 공간의 청결 및 안전 (3)	1. 실내외 공간을 청결하고 쾌적하게 관리한다.
		2. 실내외 공간과 설비를 위험요인 없이 안전하게 관리한다.
		3. 실내외 공간의 놀잇감 및 활동자료와 위험한 물건을 안전하게 관리한다.
	지표 등급	우수 : 'Y'가 3개, 보통 : 'Y'가 2개, 개선필요 : 'Y'가 1개 이하
	3-2 급·간식 (3)	1. 영양의 균형을 고려한 급·간식을 제공하고 있다.
		2. 식자재의 구입·보관 및 조리공간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3. 조리 및 배식과정을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지표 등급	우수 : 'Y'가 3개, 보통 : 'Y'가 2개, 개선필요 : 'Y'가 1개 이하
	3-3 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 및 관리 (3)	1. 손 씻기, 양치질 등 청결한 위생습관을 실천한다.
		2. 교사는 영유아의 건강상태를 살펴보고 적절하게 지원한다.
	3.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관리와 교육을 실시한다.	
지표 등급	우수 : 'Y'가 3개, 보통 : 'Y'가 2개, 개선필요 : 'Y'가 1개 이하	

평가 영역	평가 지표	평가항목
3. 건강 · 안전 (15)	3-4 등·하원의 안전 (3)	1. 교사는 영유아의 출석을 확인하며 인계규정에 따라 귀가지도를 한다.
		2. 영유아는 등원부터 하원까지 성인의 보호 하에 있다.
		3. 등·하원용 차량을 운행할 경우 안전요건을 갖추어 관리한다.
	지표 등급	우수 : 'Y'가 3개, 보통 : 'Y'가 2개, 개선필요 : 'Y'가 1개 이하
3-5 안전 교육과 사고 예방 (3)	1. 영유아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2. 보육교직원은 안전교육을 받고 영유아 학대 예방 지침을 준수한다.	
	3. 안전설비를 비상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지표 등급	우수 : 'Y'가 3개, 보통 : 'Y'가 2개, 개선필요 : 'Y'가 1개 이하	
3영역 등급	(우수) '우수' 등급 지표가 4개 이상(필수 포함) (보통) '우수' 및 '개선필요'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개선필요) '개선필요' 등급 지표가 1개 이상	

평가 영역	평가 지표	평가항목
4. 교직원 (12)	4-1 원장의 리더십 (3)	1. 원장은 자신의 전문성 향상을 통해 어린이집 발전에 기여한다. 2. 원장은 보육교직원을 존중한다. 3. 원장은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지표 등급	우수 : 'Y'가 3개, 보통 : 'Y'가 2개, 개선필요 : 'Y'가 1개 이하
	4-2 보육 교직원의 근무 환경 (3)	1. 교사를 위한 별도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2. 교사를 위한 개인사물함과 업무지원 설비를 마련하고 있다. 3. 성인용 화장실을 영유아용과 별도로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
	지표 등급	우수 : 'Y'가 3개, 보통 : 'Y'가 2개, 개선필요 : 'Y'가 1개 이하
	4-3 보육 교직원의 처우와 복지 (3)	1. 보육교직원의 복무와 보수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이를 준수하고 있다. 2. 교사의 직무스트레스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안내 및 제공한다. 3. 보육교직원을 위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표 등급	우수 : 'Y'가 3개, 보통 : 'Y'가 2개, 개선필요 : 'Y'가 1개 이하	

평가 영역	평가 지표	평가항목
4. 교직원 (12)	4-4 보육 교직원의 전문성 제고 (3)	1.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교육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2. 교사의 상호작용에 대한 관찰과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3. 교사에 대한 근무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지표 등급	우수 : 'Y'가 3개, 보통 : 'Y'가 2개, 개선필요 : 'Y'가 1개 이하
4영역 등급		(우수) '우수' 등급 지표가 3개 이상 (보통) '우수' 및 '개선필요' 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개선필요) '개선필요' 등급 지표가 1개 이상

● 필수지표 및 요소

필수지표	1-1. 영유아 권리 존중	
필수요소	3-2-2-1	식자재는 신선한 것을 구입하고 이를 위생적으로 보관함
	3-2-2-2	유통기한 경과 식품(식자재 등)이 없음
	3-2-3-3	1회 조리된 음식은 당일 소모하고 재배식하지 않음
	3-4-1-4	영유아의 인계과정이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이루어짐
	3-4-2-4	영유아를 두고 자리를 비울 때에는 책임 있는 성인에게 인계함
	3-4-3-4	운전자와 함께 차량에 동승한 성인은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함
	3-5-2-1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함 (영유아 학대 예방교육 포함)
	3-5-2-4	영유아 학대 예방 지침(체벌 금지 포함)을 준수함

# 2021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

어린이집용



**한국보육진흥원**  
Korea Childcare Promotion Institute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45, 주연빌딩 3~6층  
대표전화 1661-5666 팩스 02-6901-0151

1202021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

영양역 1. 보육영역 4. 교직원용 279